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등본입니다.

2022. 5. 15.

법원주사보 김 등



사건 피고인 2020노22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거

국적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민정(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7. 13. 선고 2020고정2 판결

판결선고 2022. 5.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주소지에 관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및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제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에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를 기재하고,           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계약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한글과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공장에서 일을 하며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이 아니라 고용주 측인           가 편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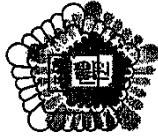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준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글을 모르는 이상 .로부터 받은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주소지에 관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및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인 .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도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 추측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한국어를 전혀 읽거나 말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계약서를 준비해 달라고 하기에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주었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공장 기숙사 관련 서류가 아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준 이유는 일용직에게는 기숙사 서류 발급이 어려워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였고, 이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가 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전부 한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준 자원봉사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신청서에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보경	_____
	판사	김동욱	_____
	판사	서제석	_____

